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(안)

의안 번호	5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☐ 제 안 사 유

충청북도 농촌지도자, 생활개선회, 4-H후원기금의 조성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의 후계세대를 육성하고 복지농촌을 건설할 유능한 농촌전문인력을 육성코저 함.

☐ 주 요 골 자

- 기금의 조성(제 4 조) : 충청북도의 출연금, 기관단체, 독지가의 성금, 회원의 회비
- 기금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(제 5 조) : 농촌진흥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로 구성
- 기금의 관리(제 10 조) : 적립기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그 증식금으로 사업 추진
- 운용기금의 사용(제 12 조) : 농촌후계세대 육성 및 농촌지도자 양성

☐ 근 거 법 령

- 지방자치법 제 133조 2항
- 농촌진흥법 제 5조 2항, 3항
- 지방재정법 제 14조 및 제 24조

☐ 제정 조례안 : 별첨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(안)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 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농촌지도자회, 생활개선회, 4-H후원회의 기금조성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”이라 함은 충청북도가 지방재정법 제 14 조 및 제 24 조와 농촌진흥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, 제 3 호, 제 4 호 및 제 3 항 제 4 호, 제 5 호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자회, 생활개선회, 4-H회의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을 말한다.

제 3 조 (기금의 구분)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한다)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.

제 4 조 (기금의 조성)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충청북도의 출연금
2. 기관단체,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, 기타 자산
3. 충청북도의 농촌지도자, 생활개선회원, 4-H후원회원의 회비
4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제 10 조 제 3 항 후단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

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
2. 기타 지원금 및 성금

제 5 조 (위원회 구성) ①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농촌지도자회, 생활개선회, 4-H후원회에 각각의 기금관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촌진흥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도국장으로 한다.

③각위원회의 위원은 농촌지도자회는 사회지도과장, 농촌지도자회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농촌지도자회의 임원 3인 및 각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위원장이 위촉하는자로 하고,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과장, 생활개선회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생활개선회 임원 3인 및 각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4-H후원회는 사회지도과장, 4-H후원회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4-H후원회임원 3인 및 각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④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각 조직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제 6 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조성 및 기본 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
2.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 운영에 따른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

제 7 조 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.

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8 조 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9 조 (위원회의 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한다.

②정기회의는 매년 3월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.

③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조 (기금의 구분관리) ①적립기금은 농촌지도사회, 생활개선회, 4-H후원회에 각각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②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.

③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 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 %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 적립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기금의 관리계획) ①기금관리계획은 매 회계년도 마다 회 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.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기금의 조성, 적립, 운용방법
2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12 조 (운용기금의 사용)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.

1.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
2.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학습활동 전개
3. 농촌 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 지원
4.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전 선도
5. 선진농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
6. 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
7. 기타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 13 조 (회계관리) ①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②기금운용관은 지도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무과 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.

③단체별 운용기금관리는 각단체별 회장책임하에 자체 기금관리규 정을 제정 관리한다.

④단체별회장은 운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사업계획 및 예산결산)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 마다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②충청북도농촌지도사회장, 충청북도생활개선회장, 충청북도4-H후원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육성기금운용결산보고서와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기금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 16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